

의안번호	2206125
의 퇴 인	민홍철 의원
회 답 일	2024. 12. 23.
추 계 번호	24C560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 고
1	안 제27조의5(건강한 심신의 보존) 제1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1. 신체적·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.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3. 체력 향상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	의무규정
2	안 제27조의5(건강한 심신의 보존) 제2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 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함	의무규정
3	안 제27조의5(건강한 심신의 보존) 제3항	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신체적·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노인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함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7조의5(건강한 심신의 보존) 제1항~제3항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, 급식, 상담 및 치료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현재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고,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하여 경로당에 대한 급식지원인력도 지원

하고 있음

- 2024년 보건복지부의 경로당에 대한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예산은 800억원 (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율 90%, 서울 3,425개소, 지방 65,031개소에 개소당 2,689천원 지원 반영)
- 경로당 급식지원인력 노인일자리 사업은 노인일자리 참여자가 경로당에 방문하여 배식, 식권 검수 등 관련 활동을 지원하거나(공익활동형), 그 외 행정 등의 지원 업무(사회서비스형)을 수행하는 사업으로, 2024년 4월 현재 6만 4,279명 지원 중
- 시·도 및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양곡비 및 냉난방비 외에 부식비, 공공요금 등의 일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
 - 보건복지부가 취합한 자료에 따르면, 2024년 기준 양곡비 및 냉난방비 지원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에 지원하는 운영비 예산총액은 1,690억원
- 또한, 지방자치단체는 현행법에 근거하여 노인의료복지시설, 노인여가복지시설,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, 상담 및 치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

□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시행할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상자 및 단가 규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- 안 제27조의5제4항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(제1항), 상담 및 치료(제3항)의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, 급식지원(제2항)의 기준·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, 현 시점에서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를 추정하기 곤란

□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 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김우림	이진우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우림	02-6788-3738	wrkim@nabo.go.kr